

<p>것 答辯 좀 주시고요.</p> <p>그렇게 된 經緯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本委員  생각으로는 적어도 서울시 都市景觀에 관한 審議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行使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對策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리고 95年 8월에 設置된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 여기에 어떤 그 동안의 活動內譯, 특기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이상입니다.</p> <p>○委員長 李容富  ね, 洪月杓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p> <p>○洪月杓委員 洪月杓委員입니다.</p> <p>조금 전에 質疑하신 內容과 關聯되는 것인데요, 25페이지 서울特別市 紛爭調整委員會가 設置 運營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公務員委員이 7名으로 되어 있고, 民間委員이 8名으로 되어 있는데요. 民間委員에 대한 것은, 公務員이야 當然職委員이겠지만 公務員이 아닌 民間委員은 選任職인지, 아니면 任命職 또는 任命하면 누가 任命을 하는지 그 名單을 좀 公開해 주셨으면 하고요.</p> <p>이미 質疑가 있었듯이 그 동안 紛爭이 發生됐는지, 紛爭이 發生돼서 이 委員會를 運營했는지 그 內容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委員長 李容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안 계시면 財務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財務局長 權五虎 財務局長 權五虎입니다. 報告에 앞서 저희 稅政課長을 紹介해 드리겠습니다.</p> <p>(幹部紹介: 稅政課長 李君杓) 油印物에 의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 歲入擴充 및 歲入構造 改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로 시민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수요가 예상됨에 따라</p> <p>○급격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입구조개편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방안을 강구</p> </div>	<p>1. 推進方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국세의 이양 및 정수교부금 요구</li> <li>○지방세 세입의 확충→과세대상의 조정</li> <li>○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시세사무소설치</li> <li>○자치구 재정자립의 평준화→자치구 세수격차 해소</li> </ul> <p>2. 推進方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선건의 및 협의</li> <li>○시세관련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정</li> <li>○조직의 정비 등 세정운영사항의 자체개선</li> </ul> <p>3. 歲入擴充方案</p> <p>가. 電話稅의 地方稅 移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전화세(국세)는 전액 지방양여금 재원이나 서울시는 양여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li> <li>○개선:전화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직접징수 및 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li> <li>○세입효과:1,811억원</li> </ul> <p>나. 教育稅 徵收交付金 請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징수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국가에서 전액부담함이 당연)</li> <li>○개선:교육세 징수액의 6%를 정수교부금으로 공제후 국고에 납입</li> <li>○세입효과:240억원</li> </ul> <p>다. 相續稅, 贈與稅, 住民稅 賦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소득세, 법인세, 농지세는 주민세를 부과하나(해당세액의 7.5%) 富의 세습인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는 주민세 미부과(조세형평 저해)</li> <li>○개선:상속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액의 7.5% 주민세 부과</li> <li>○세입예상효과:428억원</li> </ul> <p>라. 非住居用 建築物 財產稅 누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비주거용 건물(세율 0.3%)과 주거용건물(세율 0.3%~7%)의 불형평성 및 대형사무실 빌딩 등 수익성 건물의 세부담 증가 바람직함.</li> <li>○개선: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율 조정</li> </ul> <p>마. 自轉車稅 減免廢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제도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자동차세의 평균 55%감면(일반승용차와의 형평성 저해)</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제도존치이유 상실: 특수용도→일반레저스포츠용화</li> <li>○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에서 제외(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5조 삭제)</li> <li>○세입예상효과: 304억원</li> </ul> </li> <li>바. 市稅事務所 設置 檢討</li> <li>○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세11개세목중 10개세목의 부과징수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처리</li> <li>•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징수교부금의 3% -845억원)</li> </ul> </li> <li>○설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li> <li>• 자치구 종합행정에서 독립하여 세무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li> <li>• 자치구청장의 시세 징수교부금의 상향조정요구시 대처</li> </ul> </li> <li>○시세사무소 설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세의 직접 부과징수를 위한 “시세사</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무소”설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자치구 세무부서를 개편하여 시세사무소 설치(12~13개)</li> </ul> <p>사. 地方稅 減免對象 縮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현재 감면대상인 조합·공단·공사 등의 취득세, 등록세 등</li> <li>- 전액 면제단체: 37종의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 전액면제: 6종</li> <li>-50%감면 전환: 31종</li> </ul> </li> <li>- 50%감면: 27종 법인→전부과세 전환</li> </ul> <li>○세입예상효과: 300억원</li> <p style="text-align: center;"><u>自治區 稅收不均衡 解消方案</u></p> <p>《담배소비세(시세)↔종합토지세(자치구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현재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재정상태는 기준재정수용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이 200%를 초과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50%이하인 자치구가 있는 등 세수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으므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p> </div>																				
<p>1. 自治區의 自體財源 現況</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재 정 자 립 도</th> <th colspan="2">기준재정수용액 충족도</th> </tr> <tr> <td>평 균</td> <td>64.2%</td> <td>평 균</td> <td>78.2%</td> </tr> <tr> <td>90%이상</td> <td>3개구</td> <td>200%이상</td> <td>1개구</td> </tr> <tr> <td>60%~90%</td> <td>5개구</td> <td>100%~200%</td> <td>2개구</td> </tr> <tr> <td>60%미만</td> <td>17개구</td> <td>100%미만</td> <td>22개구</td> </tr> </table>		·재 정 자 립 도		기준재정수용액 충족도		평 균	64.2%	평 균	78.2%	90%이상	3개구	200%이상	1개구	60%~90%	5개구	100%~200%	2개구	60%미만	17개구	100%미만	22개구
·재 정 자 립 도		기준재정수용액 충족도																			
평 균	64.2%	평 균	78.2%																		
90%이상	3개구	200%이상	1개구																		
60%~90%	5개구	100%~200%	2개구																		
60%미만	17개구	100%미만	22개구																		
<p>2. 稅收不均衡 原因-종합토지세의 자치구간 편제</p> <p>○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편제도 비교</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95징수예상액</th> <th>최 다 구</th> <th>최 소 구</th> <th>차 이</th> </tr> <tr> <td>종합토지세</td> <td>4,600</td> <td>강남구 904</td> <td>도봉구 58</td> <td>15.6배</td> </tr> <tr> <td>담배소비세</td> <td>4,600</td> <td>영등포 290</td> <td>도봉구 106</td> <td>2.7배</td> </tr> </table>		구 분	'95징수예상액	최 다 구	최 소 구	차 이	종합토지세	4,600	강남구 904	도봉구 58	15.6배	담배소비세	4,600	영등포 290	도봉구 106	2.7배					
구 분	'95징수예상액	최 다 구	최 소 구	차 이																	
종합토지세	4,600	강남구 904	도봉구 58	15.6배																	
담배소비세	4,600	영등포 290	도봉구 106	2.7배																	
<p>3. 問題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간 세수불균형상태 심화로 자치구간 균형발전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재정수용액 충족도: 강남구 213.9%, 중랑구 48.1%</li> </ul> </li> <li>○기준재정수용액을 초과하는 자치구는 재원이 많이 필요한 기반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어 문화복지부분에 투자하는 반면</li> <li>○기준재정수용액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기반</li> </ul>	<p>시설이 미비되어 있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기본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p> <p>4. 改善方案-세목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시세와 자치구세 상호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소비세(시세)↔종합토지세(자치구세)</li> </ul> </li> <li>○관련조치사항: 교육비 전출금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li> </ul>																				

5. 期待效果：자치구 세수불균형 해소

재정자립도			기준재정수요액충족도		
자립도	현행	교환후	충족도	현행	교환후
90%이상	3개구		200%이상	1개구	
80%~90%	2개구	3개구	150%~200%	1개구	
60%~80%	3개구	11개구	100%~150%	1개구	3개구
50%~60%	10개구	9개구	50%~100%	19개구	22개구
50%미만	7개구	2개구	50%미만	3개구	

6. 진행사항

○ 내부부에 관련법 개정건의

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容富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財務局長 報告內容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십시오.

宋仁回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 宋仁回委員 宋仁回委員입니다.

市稅事務所 設置 發想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自治區廳長의 반발이나 반대 같은 것은 아직 가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까? 答辯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프형 自動車에 대한 地方稅 減免, 지금 지프차는 4륜 구동차인데, 이것은 거의 다 레저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산용으로는 거의 안 쓰인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1次 段階로 조금씩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전부 다 55% 減免하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推進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구나 지프형 차들은 디젤 기름을 쓰기 때문에싼 기름값에다가 공해까지 유발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地方稅 減免對象에 혹 過去에 官邊團體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기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基準財政需要額 計算方法을 內務部에서 改正하는 것으로, 計算方法을 바꾸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容富 高溶振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 高溶振委員 아까 自治區間 財政不均衡 解消 方案으로 담배消費稅와 綜土稅의 交換方案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期待效果, 즉 봐서 상당히 肯定的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에 따른 어떤 나뉠대로 發見하신 問題點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一部 學者들이나 여러 가지 團體에서 얘기하는 逆交付稅制度는 일체 고려하고 계신 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市稅事務所 아까 말씀주셨는데 지금 豫測이 대개 12個, 13個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렇게 設定하시는 方案이 어떤 基準으로 나온 것인지 參考삼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容富 柳鍾珽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 柳鍾珽委員 宋仁回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프형 自動車가 特殊用途로 해서 自動車稅 減免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特殊用途가 무엇인지, 지금 推進하시는 方向은 옳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주로 옛날에는 지프면 무슨 情報機關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特殊用途라는 것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容富 洪承采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 洪承采委員 洪承采委員입니다.

7月 中인가요, 各 自治區別로 市有地에 대해서 全面的으로 把握하셨지요, 局長님?

○ 財務局長 權五虎 네.

○ 洪承采委員 그리고 把握現況에 대해서 간략하게 報告말씀 주시고, 本委員이 알고 있기에 지금 市有地가 90年度 以後에 엄청난 市有地가 지금 賣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紙上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地自治發展